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차별 해소 관련 국제조약 이행 계획의
수립·시행 및 국회 보고에 관한 규정 신설〉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171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17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경숙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5. 4. 28.
- (3) 회 부 일 : 2025. 4.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이행 현황에 대한 우려사항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해당 권고안에는 지난 권고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의 권고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대한민국 정부가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가 국제조약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계획과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협약과 같이 장애인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함과 동시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장애인 차별 해소 관련 국가가 가입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② (생략) <u><신설></u>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 <u>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u> 」 등 장애인 차별 해소와 관련하여 국가가 가입한 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u><신설></u>	제8조의3(조약 이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 <u>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u> 」 및 그 밖에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조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조약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u>② 조약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조약 이행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u> <u>2. 조약 이행을 위한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u> <u>3. 조약 이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및 인력 확충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조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u> <u>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약 이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④ 그 밖에 조약 이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2. 검토의견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2006년 12월, 제61차 UN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후,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2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2009년 1월부터 발효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¹⁾

- 동 협약은 총 50개 조항과 선택의정서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국제 인권 조약으로, 모든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 자유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협약 비준 당시,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을 유보하였으나, 2022년 12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현재는 선택의정서까지 모두 비준되었음.

□ 한편,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5조²⁾는 당사국이 협약의 이행 정도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준 후 2년 이내에 제1차 보고서를, 이후에는 최소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1년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는 2014년에 채택되었음.

이후, 2019년에는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최종견해는 2022년에 채택되었음(참고자료 1: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제2·3차 최종견해 주요 권고사항 요약).

그러나 2·3차 최종견해에서도 1차 최종견해와 유사한 내용의 권고가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가 동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³⁾

1) 일반적으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으로 통칭됨.

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5조 당사국 보고서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진전사항에 관하여 이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안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그 이후 당사국은 최소한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출한다.
3. 위원회는 이 보고서의 내용에 적용 가능한 지침을 결정한다.
4. 위원회에 제1차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후속보고서에 이전에 제출한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당사국은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는 경우,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따라 이를 준비하고 이 협약의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요청된다.
5.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애로점을 명시할 수 있다.

□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장애인 차별 해소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가입한 그 밖의 조약 이행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조약에 관한 이행 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국제사회에 조약 이행 의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① 조약의 범위, ② 이행 계획 수립·시행 주기, ③ 기존 제도와의 중복에 따른 개정 실익 측면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에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조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그 이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국회의 비준 동의와 대통령의 공포 등 헌법상 절차를 거쳐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조약이지만(참고자료 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외 장애인 관련 체결 조약 개요),⁴⁾

3) 박효령. (2025.1.16.).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11개 중 단 2개 이행…“정부 차원 계획·법 필요”. 투데이신문.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607>

4) 「대한민국헌법」 제6조제1항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의 요건으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은 조약을 의미함.(국회사무처. (2024). 법제기준과 실제.)

「대한민국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 밖에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조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약’의 경우는 이 같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단순 가입 조약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⁵⁾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이라는 표현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하면, 대통령령에서 어떤 조약을 지정할 수 있을지 예측 가능성이 낮고, 위임의 범위 또한 포괄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위임 입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향후 조약 지정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조약” 또는 “장애인 관련 당사국의 이행 보고 의무가 부과되는 조약” 등과 같이 조약의 성격과 이행 보고 의무 여부 등을 기준으로 법률에서 조약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은 조약 이행 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를 ‘매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상 국가 보고 주기는 4년이며,

장애인 관련 주요 정책들도 대부분 5년 주기의 중장기 계획⁶⁾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실행력 확보 및 행정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매년 조약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 셋째,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조약 이행 계획의 수립·시행 및 국회 보고 의무 등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미 수립·시행하고 있는

5) 참고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외 우리나라가 장애인과 관련하여 체결한 조약으로는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59호), 맹인, 시각 손상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이 있으며, 이 조약들은 국회의 비준 동의와 대통령의 공포 등 헌법상 절차를 거쳐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조약임.

6)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 건강보건의료종합계획」,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등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정기적인 실태조사’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실현되고 있으며, 관련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예컨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⁷⁾ 및 제10조의3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계획과 연차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결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 이에 따라 수립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이행 전략 수립”, “선택의정서 이행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등 조약 이행과 관련된 정책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참고자료 3: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 관련 내용), 향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조약 이행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됨.

7)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성과의 평가를 확정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¹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동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교육, 고용, 재화·용역 이용, 사법·행정 절차, 건강권 등 조약 이행과 밀접한 분야의 차별 실태뿐만 아니라,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실태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약 이행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도 이를 통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이 법의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시설·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2. 교육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3.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4. 공공기관 등의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과 참정권 행사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5. 모·부성권 및 성(性)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6.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7.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실태
 8. 그 밖에 법의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조사 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장애인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4.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국제조약의 실효적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시행계획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음.
 - 동법 제10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부담하고, 제10조의3에 따라 종합계획·시행계획 확정시 지체 없는 국회 보고 절차를 규정하며, 제11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부처별 소관 사업의 장애인 복지 및 권익증진의 취지를 달성하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계획을 심의·조정을 함.
 - 위와 같은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편, 국제조약 또는 이에 기초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려움.
 - 참고로, 「아동복지법」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한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기능은 민간 장애인단체 및 국가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토록 함으로써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 있음.

문 의 처
02)6788-5509

〈참고자료 1: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제2·3차 최종견해에 제시된 주요 권고사항 요약〉

○ 일반원칙 및 의무(제1~4조)

- 협약에 부합하게 장애 관련 법률 및 정책을 검토하고 장애 개념 확대(시청각복합장애, HIV/AIDS장애 등 포괄)와 장애인권 모델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장애 평가 시스템 변경
- 선택의정서 기준
- 공공의사결정 과정과 협약의 이행 및 모니터링 과정에 장애인 단체를 통한 다양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보장

○ 평등 및 비차별 (제5조)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제도 정비,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의 부담 면제·경감,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대한 효과적 조사 보장

○ 장애여성 (제6조)

- 모든 성 관련 법률과 장애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장애여성(소녀 포함) 주류화 및 공공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보장 등

○ 장애아동 (7조)

- 장애아동의 능력 및 견해 존중 메커니즘 수립과 생활 모든 분야에 장애아동을 포함하는 시책 추진
- 모든 장애아동이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검토

○ 인식 제고 (제8조)

- 장애 인식 제고 및 관련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전략 채택
- 모든 교육 수준에서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과정 도입

○ 접근성 (9조)

- 관련법을 개정해 건축물의 규모나 건축 연도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의 접근성 확보,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국가 접근성 전략 채택
- 교통에서의 다양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 확충 및 교통 관련 정보 접근성 보장)
- 공공 및 민간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

○ 생명권 (제10조)

- 장애인 자살 및 실종 예방 국가 전략 채택·시행 등

○ 위기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비상사태 (제11조)

- 모든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재해 위험 감소 계획 수립 등
- 코로나19 대응책에서 장애 주류화(관련 정보 및 프로그램 등 모든 대응책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및 비상시 장애인 탈시설화 지원 방안 채택 등
- **법 앞의 동등한 인정 (제12조)**
 - 대체의사결정체계를 지원의사결정체계로 대체
 - 장애인의 법적 역량 인정 및 지원의사결정에 대한 정보 개발·배포
- **사법에 대한 접근 (제13조)**
 - 사법절차 전 단계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위한 법적·행정적·사법적 조치 채택
 - 법적 절차 전반에서 대안적 의사소통 수단 개발 및 모든 사법 시설에 대한 물리적 접근 보장
 - 장애인이 동등한 기준으로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치·지원
- **신체의 자유 및 안전 (제14조)**
 - 자·타해 위험을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자유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한 모든 입법조항 폐지(성년후견 관련 민법, 정신건강복지법 등) 및 권리 회복 절차 보장 법률 도입, 관련 모니터링 메커니즘 수립 등
-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제15조)**
 - 관련 보호조치 채택 및 모든 시설 장애인의 진정 절차 이용 보장
 - 관련 가해자에 대한 조사, 제재, 처벌
-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제16조)**
 - 장애인 대상 착취, 폭력 및 학대 방지 종합 전략 채택 및 구제책 보장, 관련 효과적인 모니터링 행동계획 수립·시행
 -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관련 센터, 쉼터 포함) 보장 등
- **개인의 완전함 보호 (제17조)**
 - 강제불임수술 관행 근절 조치, 관련 보상 및 보호 조치 제공
- **이주 및 국적의 자유 (제18조)**
 - 장애를 이유로 입국을 제한하지 않고, 장애가 있는 이민자가 장애 관련 기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차별 조항 폐지
-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 (제19조)**
 -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검토하고, 협약에 따라 충분한 예산 및 기타 조치 보장
 - 거주시설에 있는 성인 및 장애아동의 탈시설화 전략 시행 강화 및 지역사회

회 기반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증진

○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보장 (제21조)

- 모든 공공정보(미디어 포함)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 방송의 장애인 접근성 제공 지침 검토(적절한 정보제공 표준 포함)

○ 사생활 존중 (제22조)

- 협약 및 장애 인권 모델에 부합하는 실종 방지 정책 시행(지적·심리사회적 장애인의 GPS 추적장치에 대한 본인 동의 절차 도입 등)

○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제23조)

- 관련 법을 개정하여 결혼, 가족구성 및 부모의 책임을 행사할 권리 명시
-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조치 채택

○ 교육 (제24조)

- 포괄적 포용적 교육 정책 수립, 교육 관련 보조기구 및 학습자료 등 제공
- 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이 아닌 교육부 산하의 유치원에서 장애아동 담당

○ 건강 (제25조)

- 상법 732조의 폐지 및 장애여성 건강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 장애인의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의료 전문가 교육 개발 및 의료 정보 제공 등

○ 훈련 및 재활 (제26조)

- 시민권 등에 관계없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재활 및 (직업)훈련 보장

○ 근로 및 고용 (제27조)

- 장애차별적 법률 폐지, 차별금지·노동권 보장, 최저임금법을 검토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 적용제외된 장애인에게는 보상금 지급
- 근로환경 접근성 보장, 보호고용에서 개방고용으로의 전환 조치 시행, 의무고용 등 노동시장의 장애인 고용 촉진 시책 이행 보장

○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제28조)

-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및 빈곤 감소 제도 강화, 부양의무자 요건 전면 폐지 등 장애인연금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등

○ 정치 및 공적생활 참여 (제29조)

- 선거과정과 정치 및 공적생활에서의 모든 차별적 조항 폐지 및 장애인의 참여 보장(선거, 투표절차, 시설, 선거 자료 등의 장애인 접근성 포함)

○ 문화생활, 여가, 레저 및 스포츠 참여 (제30조)

- 마라케시 조약의 효과적 이행 보장 및 문화생활, 레저, 스포츠 등의 장애인 참여권 보장 노력 강화

※ 마라케시 조약은 2013. 6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채택한 조약. 핵심 내용은 시각장애인을 비롯해 책을 읽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저작권법에 예외를 뒤, 활자 콘텐츠를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임.

○ 통계 및 데이터 수집(제31조)

-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를 세분화하여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절차의 신속한 개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주기적인 연구에 자금을 배정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자체 역량 구축, 그 외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독립적 참여적 연구 지원

○ 국제 협력 (제32조)

- 국제협력계획, 프로그램 및 사업의 개발 및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 단체가 효과적으로 협의하고 참여하도록 권고

○ 국내 이행 및 감독 (제33조)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회의 주기 강화(단축)
- 국가인권위원회가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파리 원칙을 완전히 준수하여 그 권한을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인권위의 독립적인 위원 선출과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적 자원 강화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22, 9월 27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제2·3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보도자료].

〈참고자료 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외 장애인 관련 체결 조약 개요〉

-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국제노동기구협약 제159호)
 - (채택·비준 경과) 국제노동기구에서 1983년 6월 20일 채택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에 관한 협약으로 2000년 11월 15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 (발효일) 2000. 11. 15.(다자조약, 제1540호, 2000. 12. 13. 관보 게재)
 - (내용) 장애인과 일반 근로자 간의 동등한 기회의 원칙에 기반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국가정책을 입안·이행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함에 있어 모든 범주의 장애인이 적절한 직업재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며, 공개노동시장에서 이들을 위한 고용기회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남성 및 여성 장애인에 대한 기회 및 대우의 평등은 존중하고, 장애인과 다른 근로자 간에 기회 및 대우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한 적극적 조치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대우로 간주되지 아니함.
- 맹인, 시각 손상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 (채택·비준 경과) 2013년 6월 28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되고, 2014년 6월 26일 제네바에서 최석영 주제네바 대한민국대사가 서명한 후, 2015년 9월 9일 제3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10월 8일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여 2016년 9월 30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 (발효일) 2016. 9. 30.(다자조약, 제2304호, 2016. 9. 12, 관보 게재)
 - (내용)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연합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선포된 비차별, 기회 균등, 접근성 및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와 통합의 원칙에 기반하여 시각 손상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가 있는 사람의 정보·사상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연구 수행의 자유, 문학·예술적 창작의 자유 등을 보장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3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 관련 내용〉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이행 전략 수립

- 장애인권리협약 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종합 이행전략 마련('23~)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주요 내용('22.8)

장애 개념 확대, 장애인권모델 반영 장애평가시스템 변경, 정신장애인의 보편적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포함, 장애인차별구제 소송 부담 경감, 장애 관련 정책에서 장애여성 주류화, 건축연도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의 접근성 확보, 대체의사결정체계를 지원의사결정체계로 전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검토 및 예산 확보, 포용적 교육정책 수립, 정신장애인의 취업 제한 법률 폐지,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책 마련, 보호고용에서 개방고용으로 전환 등

- 권고사항 이행 평가를 위한 핵심과제 개발, 이행과제 부처 간 협의·조정 등 위한 범 부처 종합 이행방안 마련 연구 실시('23)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방안 마련('23) 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거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추진('2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내 이행 실효성 제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주요내용

- 자국 내 권리구제 절차(사법적 성격)를 모두 거쳤음에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집단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하는 제도(이하, '개인진정제도')

- 국가인권위원회 중심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홍보 및 개인진정 지원사업 추진('23)
 - * (예시)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개인진정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등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내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인진정제도 마련 연구용역 추진('24)
 - 지원인력 양성, 유엔 조사 대응, 절차법 제정 검토,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국내 개인진정제도 마련방안 연구·도출
- 연구결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단체 등 협의를 통해 국내 개인진정제도 마련 및 추진체계 수립 추진('25~)

자료: 보건복지부